

변경대비표(일반 및 자펀드)

1. 대상 펀드

no.	펀드명	운용역	결산	변동성	기업공시서식	영업일 정의	기타
1	미래에셋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					
2	미래에셋차이나 H 레버리지 2.0 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					
3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 Q 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	○	○	○		
4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	○	○		
5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	○	○		
6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4 호(주식)		○	○	○		
7	미래에셋국공채 MMF 투자신탁제 1 호[국공채]		○	○	○		
8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	○	○		
9	미래에셋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	○	○		
10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분배형)		○	○	○		
11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	○		
12	미래에셋미국나스닥 100 인덱스증권자투자신탁(주식)(H)		○	-	○		
13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 3 호(주식)		○	○	○		
14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	○		
15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	○	○		
16	미래에셋 100 세시대 QV 퇴직연금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재간접형)					○	7),8)
17	미래에셋 100 세시대 QV 퇴직연금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	7),8)

no.	펀드명	운용역	결산	변동성	기업공시서식	영업일 정의	기타
18	미래에셋마에스트로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					○	
19	미래에셋연금저축베스트컬렉션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20	미래에셋퇴직연금소비성장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21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30 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22	미래에셋재형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23	미래에셋상생 ESG 증권자투자신탁(주식)					○	
24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 3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6-1)
25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3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6-1)
26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			○	○	○	6-1)
27	미래에셋개인연금코어밸류 2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6-1)
28	미래에셋개인연금코어밸류 4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6-1)
29	미래에셋개인연금고배당포커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6-1)
30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	○		6-1)
31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 4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6-1)
32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로스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6-1)
33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다이나믹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			○			6-1)
34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		6-1)
35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6-1)
36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6-1)
37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헬스케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6-1)
38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	○	○	6-1)

no.	펀드명	운용역	결산	변동성	기업공시서식	영업일 정의	기타
39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6-1)
40	미래에셋개인연금소비성장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6-1)
41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 3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6-1)
42	미래에셋개인연금스마트롱숏 5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6-1)
43	미래에셋개인연금아시아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재간접형)						6-1)
44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6-1)
45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6-1)
46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채권)						6-1)
47	미래에셋개인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6-1)
48	미래에셋개인연금펀드솔루션 4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재간접형)						6-1)
49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컨슈머 G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	6-2)
50	미래에셋장기성장포커스소득공제장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	6-2)
51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6-2)
52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성장유망중소형주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6-2)
53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스마트롱숏 70 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6-2)
54	미래에셋소득공제장기코어밸류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6-2)
55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709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					○	6-3)
56	미래에셋 BRICs 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6-3)
57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6-3)
58	미래에셋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6-3)

no.	펀드명	운용역	결산	변동성	기업공시서식	영업일 정의	기타
59	미래에셋글로벌다이나믹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						6-3)
60	미래에셋글로벌인컴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6-3)
61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203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6-3)
62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304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6-3)
63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405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6-3)
64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506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6-3)
65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 6070 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6-3)
66	미래에셋배당커버드콜액티브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혼합)						6-3)
67	미래에셋성장유망중소형주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6-3)
68	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	○	○		6-3)
69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 Q 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6-3)
70	미래에셋이머징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재간접형)						6-3)
71	미래에셋인덱스플러스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6-3)
72	미래에셋차이나업종대표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6-3)
73	미래에셋코어밸류연금저축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6-3)

2. 변경 사항

- 1) 운용역 변경
- 2)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 3)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
- 4)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5) 영업일 정의 정정

6-1) 전환가능 투자신탁의 영업일 정의 정정(개인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

6-2) 전환가능 투자신탁의 영업일 정의 정정(소득공제장기전환형 투자신탁)

6-3) 전환가능 투자신탁의 영업일 정의 정정(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

7)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8) 법 개정사항 반영

3. 효력발생예정일: 2024년 12월 05일 (목)

4. 변경 내용

1) 운용역 변경

펀드명	변경 전 운용역	변경 후 운용역
미래에셋글로벌배당커버드콜액티브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혼합)	<u>이현경</u>	<u>송진용</u>
미래에셋차이나H레버리지2.0증권자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u>이현경</u>	<u>송진용</u>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Q증권자투자신탁1호(주식)	<u>이상명</u>	<u>송진용</u>

2) 펀드 결산에 따른 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요약정보 <투자비용>	-	<u>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업데이트</u>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u>총보수·비용(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포함) 및 증권거래비용 등 업데이트</u>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u>재무정보 및 주요 수치 업데이트</u>
제 5 부. 4.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u>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업데이트</u>

3) 투자위험등급 관련 변동성 값 등 업데이트

[투자설명서]

펀드명	변경 전 [표준편차]		변경 후 [97.5% VaR]	
	투자위험등급	변동성 값(%)	투자위험등급	변동성 값(%)
미래에셋인디아디스커버리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2등급	<u>17.43</u>	2등급	<u>32.93</u>
미래에셋인도중소형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2등급	<u>18.42</u>	2등급	<u>36.1</u>
미래에셋디스커버리증권투자신탁 4 호(주식)	2등급	<u>17.58</u>	2등급	<u>35.87</u>
미래에셋국공채 MMF 투자신탁제 1 호[국공채]	6등급	<u>0.17</u>	6등급	<u>0.04</u>
미래에셋고배당포커스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3등급	<u>13.64</u>	3등급	<u>29.31</u>
미래에셋헤지펀드셀렉션혼합자산자투자신탁(사모투자재간접형)	5등급	<u>2.69</u>	5등급	<u>8</u>
미래에셋월지급식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분배형)	4등급	<u>5.3</u>	5등급	<u>9.68</u>
미래에셋글로벌인컴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4등급	<u>5.3</u>	5등급	<u>9.64</u>
미래에셋개인연금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4등급	<u>6.3</u>	4등급	<u>14.27</u>
미래에셋마켓플러스증권자투자신탁 3 호(주식)	2등급	<u>16.32</u>	2등급	<u>37.65</u>
미래에셋퇴직플랜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 40 증권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4등급	<u>8.01</u>	4등급	<u>16.73</u>
미래에셋로저스농산물지수특별자산자투자신탁(일반상품-파생형)	2등급	<u>16.14</u>	3등급	<u>28.67</u>
미래에셋개인연금단기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	5등급	<u>0.89</u>	5등급	<u>1.46</u>
미래에셋아세안셀렉트 Q 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3등급	<u>10.87</u>	3등급	<u>21.22</u>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그레이트컨슈머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2등급	<u>18.46</u>	2등급	<u>39.68</u>
미래에셋개인연금글로벌배당과인컴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채권혼합)	4등급	<u>5.19</u>	4등급	<u>10.73</u>
미래에셋소비성장연금증권전환형자투자신탁 1 호(주식)	2등급	<u>18.03</u>	2등급	<u>43.77</u>

*2024.3.1 시행일 이후 결산기가 도래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부터 적용

4)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2 부.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나. 환매	(8) 환매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신설>	(8)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별첨 1>

*2024.3.1 시행일 이후 결산기가 도래하는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포함)부터 적용

<별첨1>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시 비용 미발생
X	X	○

5) 영업일 정의 정정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 2 조(용어의 정의)	2. "영업일"이라 함은 <u>판매회사의 영업일</u> 을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u>한국거래소 개장일</u> 을 말한다.	
제 23 조(판매가격)	④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u>한다.</u> (이하 생략)	④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u>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제 2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u> (이하 현행과 같음)	
제 50 조의 9(투자신탁의 전환)	⑥ 제 3 항에 의한 전환의 경우 기준영업일은 <u>판매회사의 영업일</u> 을 말한다.	⑥ 제 3 항에 의한 전환의 경우 기준영업일은 <u>한국거래소의 개장일</u> 을 말한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u>판매회사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한다.</u>	본 조항은 전환형 자투자신탁에 한함.

6-1) 전환가능 투자신탁의 영업일 정의 정정(개인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 2 부. 11. 다. 전환	(4) 위의 (2)항 2 호, 3 호, 6 호, 8 호, 10 호에 의한 전환의 경우 기준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위의 (2)항 1 호, 4 호, 5 호, 7 호, 9 호, 11 호, 12 호에 의한 전환의 경우 기준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4) 위의 (1)항 및 (2)항에 따른 전환 시 적용되는 기준영업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1)항 제 1 호, 제 5 호, 제 6 호, 제 13 호, 제 15 호, 제 16 호, 제 20 호, 제 22 호, 제 23 호, 제 25 호: 판매회사의 영업일 2. 위 (1)항 제 2 호부터 제 4 호, 제 7 호부터 제 12 호, 제 14 호, 제 17 호부터 제 19 호, 제 21 호, 제 24 호: 한국거래소의 개장일. 다만,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6-2) 전환가능 투자신탁의 영업일 정의 정정(소득공제장기전환형 투자신탁)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 2 부. 11. 다. 전환	(3) 위의 (1)항 1 호에 의한 전환의 경우 기준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또한, 위의 (1)항 2 호 및 3 호에 의한 전환의 경우 기준영업일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3) 위의 (1)항에 따른 전환 시 기준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6-3) 전환가능 투자신탁의 영업일 정의 정정(연금증권전환형 투자신탁)

[투자설명서]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제 2 부. 11. 다. 전환	(4) 위의 (2)에 의한 전환의 경우 기준영업일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다만,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4) 위의 (1)항 및 (2)항에 따른 전환 시 적용되는 기준영업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 (1)항 제 10 호 또는 제 14 호: 판매회사의 영업일 2. 위 (1)항 제 1 호부터 제 9 호, 제 11 호, 제 12 호, 제 13 호, 제 15 호부터 제 19 호: 한국거래소의 개장일. 다만, 전환청구일이 판매회사 영업일이면서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이 아닌 경우에는 전환청구일을 영업일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7) 고난도 관련 문구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 2 조(용어의 정의)	<신설>	- “고난도금융투자상품”이라 함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 53 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신설>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8) 법 개정사항 반영
[집합투자규약]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13조(자산운용지시 등)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투자대상자산 등)	-채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자산유동화증권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생략)	-채권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자산유동화증권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제17조(운용 및 투자 제한)	2. (생략) 나.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중략)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생략)	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삭제> (현행과 같음) <삭제> , (현행과 같음)
제42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③ (생략) <신설>	①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신탁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 총회 결의를 거쳐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1 항 외의 사유로 수익자 총회 결의를 얻어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주)